[서식 예] 근저당권부질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



근저당권부질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

채권자 〇〇〇

○○시 ○○군 ○○면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무자 〈〉〈〉주식회사

○○시 ○○군 ○○면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대표이사 ◇◇◇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목적물의 가액 26,000,000원

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

피보전권리의 요지 근저당권부 질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

신 청 취 지

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근저당권부 질권에 의한 질권실행, 질권의 양도 등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신 청 이 유

1. 피보전권리

가.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대 73m²(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)은 원래 채 권자의 소유였는데, 20○○. ○. ○.경 채권자가 신청외 ◈◈동재건축조합(이 하 이 사건 신청외 조합이라고 함)과의 사이에 장차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주위 토지 위에 건립될 재건축아파트 25평형 1세대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 하기로 약정하고 신청외 조합에게 20○○. ○. ○. 신탁을 원인으로 ○○지방 법원 ○○등기소 접수 제○○○호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기라고 함)를 해주었는바, 신청외 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함께 이 이 이 이 신청외 주식회사 ■ □건설에게 같은 등기소 접수 제 이 이 이 호텔 전체고액 금 26,000,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라함)를 해주고 위 주식회사 ■ □건설은 20 이 이 이 시간 질권설정등기 소 접수 제 이 이 이 호로 위 근저당권부 질권설정등기(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등기라고 함)를 해주었습니다.

- 나. 그런데 채권자는 신청외 조합의 재건축사업 시행지 내에서 대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없어 조합주택을 분양 받을 수 없으므로 위 신청외 조합의 채권자에 대한 재건축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상태에 있었으므로, 채권자는 ○○지방법원 20○ ○○가단○○○호로 위 약정의 해제를 사유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신청외 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○ ○. ○. ○.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.
- 다. 따라서 신청인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신청외 조합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위 판결 이전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부 질권설정등기가 먼저 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신청외 조합 명의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.
- 라. 그런데 신청외 조합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신탁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나 신탁의 목적이 불능인 경우에 해당하여 등기원인인 신탁이 무효로 됨으로써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터 잡아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근저당권부 질권설정등기 또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신청외 주식회사 ■■건설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.
- 마. 이에 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신청외 주식회사 ■■건설과 근저당권부 질권설정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소송을 ○○지방법원 20○○가단○○○○호(제○민사단독)로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습니다.

2. 보전의 필요성

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 및 신청외 주식회사 ■■건설을 상대로 한 위 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은 뒤에야 ○○지방법원 20○○가단○○○호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수 있을 터인데, 만약 그 동안에 채무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질권을 양도한다면 채권자가 이미 확정판결 받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는 물론 채무자 및 위 신청외 주식회사 ■■건설에 대한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염려가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.

3. 결 론

위와 같은 사유로 채권자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이르렀는바, 채권자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므로, 이 사건 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,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소 명 방 법

1. 소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

1. 소갑 제2호증 판결등본

1. 소갑 제3호증 소장

1. 소갑 제4호증 이의제기된 조정결정

1. 소갑 제5호증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

1. 소갑 제6호증 조합원확인요청에 대한 회신

첨 부 서 류

1.위 소명방법 각 1통

1.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

1.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0. 0.

위 채권자 〇〇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

목적물의 표시

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대 73㎡에 관하여 20○○. ○. ○. ○○지방법원 ○○ 등기소 등기접수 제○○○호로 마쳐진 근저당권부 질권. 끝.

	,					
제출법원	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 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할하는 지방법원			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(목록 5부정도 첨부)					
불복절차 및 기간	 (채권자) ・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(민사집행법 제301조, 제281조 제2항) ・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(민사소송법 제444조) (채무자) ・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(민사집행법 제301조, 제283조), 본안의 제소명령(민사집행법 제301조, 제287조) 등 ・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 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・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.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 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. 					
비 용	• 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) • 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 • 등록면허세: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,000분의 2(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.목),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 분의 20(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)					

※ 집행절차

				보증보험사와 지급 보증위탁계약체결	
가처분신청	→ 2~3일후	담보제공명령서 수령(공탁명령)	<i>→</i> 5일내	※ 지참서류등1. 가처분신청서사본2. 주민등록표등본3. 담보제공명령서4. 도장	

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(보험증권앞면 사본 수통첨부)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가압류, 가처분